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대책에 관하여

변리사 김세원 (ksw@hanyanglaw.com), 한양국제특허법인

JETRO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2014년 기술유출 통계

(자료: 산업기밀보호센터)

연도별 산업스파이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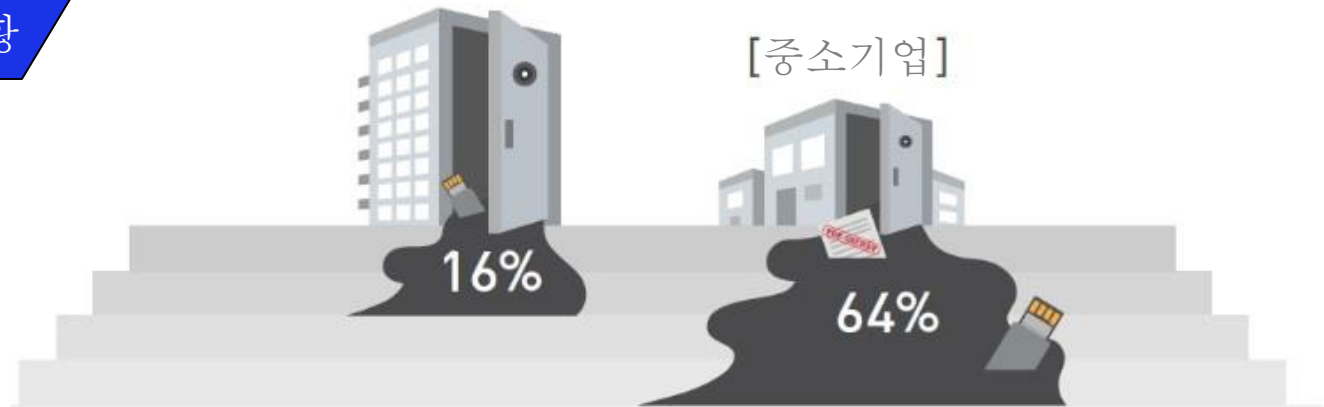


피해기업 규모별 현황

[대기업]

(2010년~2014년/최근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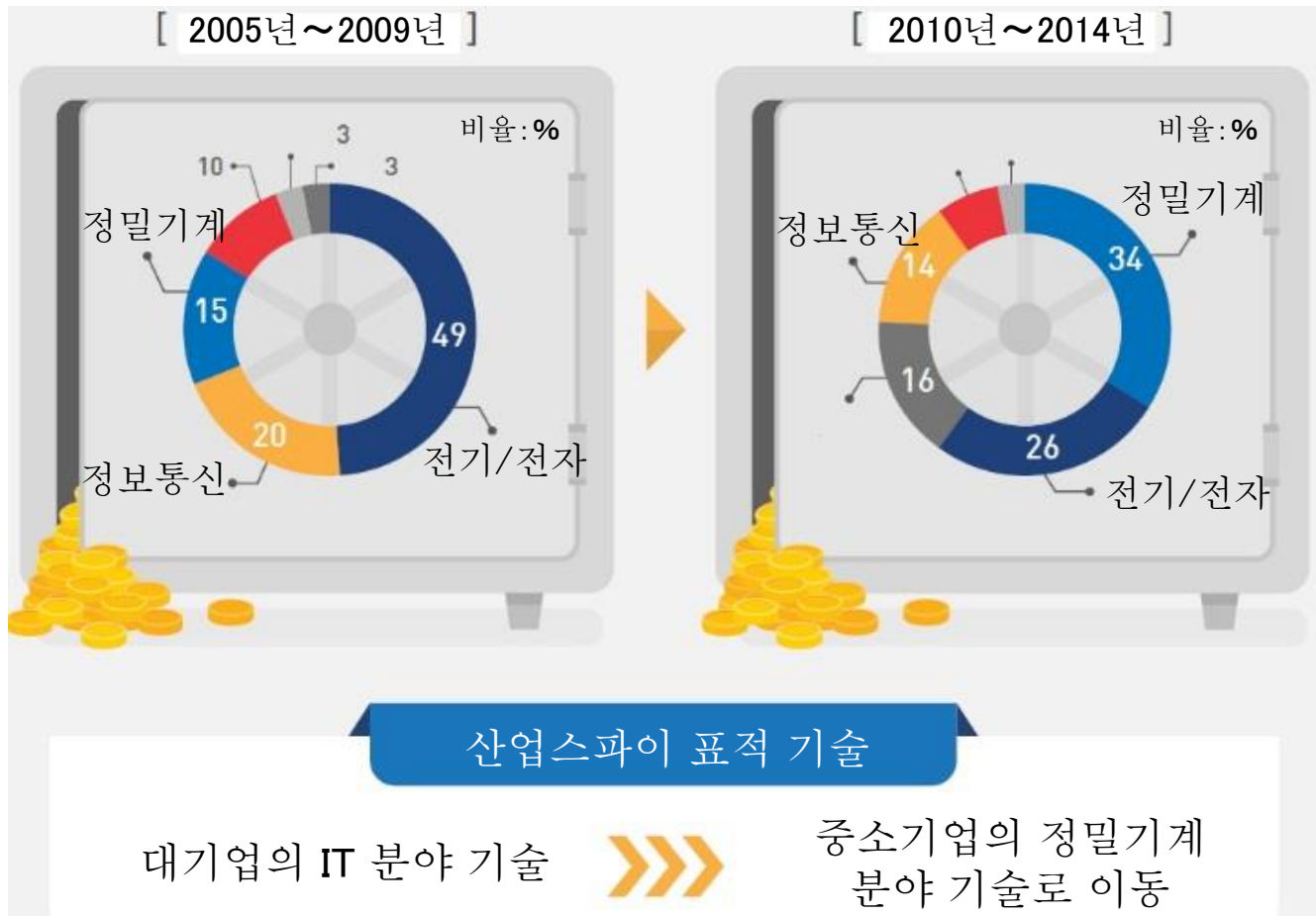
[중소기업]



2014년 기술유출 통계

(자료: 산업기밀보호센터)

기술유출 분야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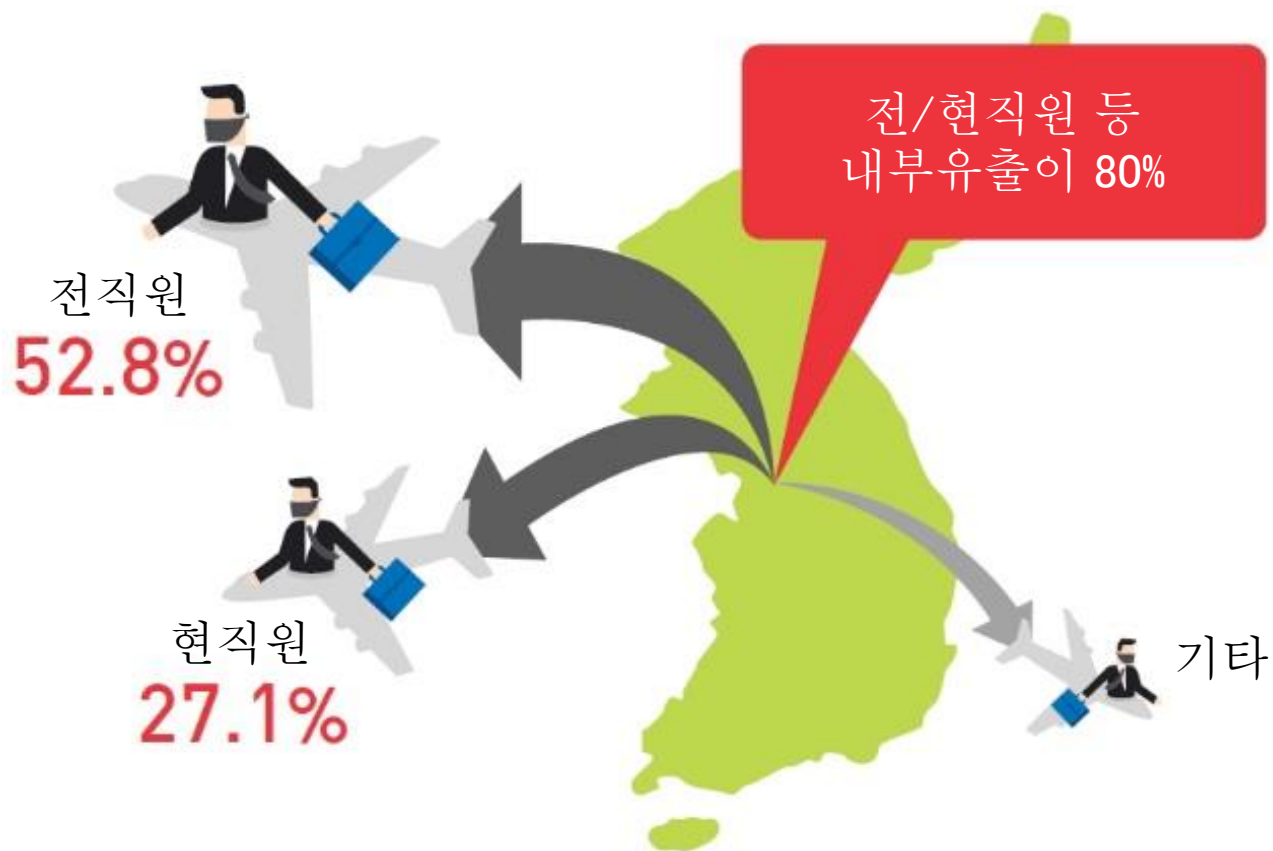


2014년 기술유출 통계

(자료: 산업기밀보호센터)

산업 스파이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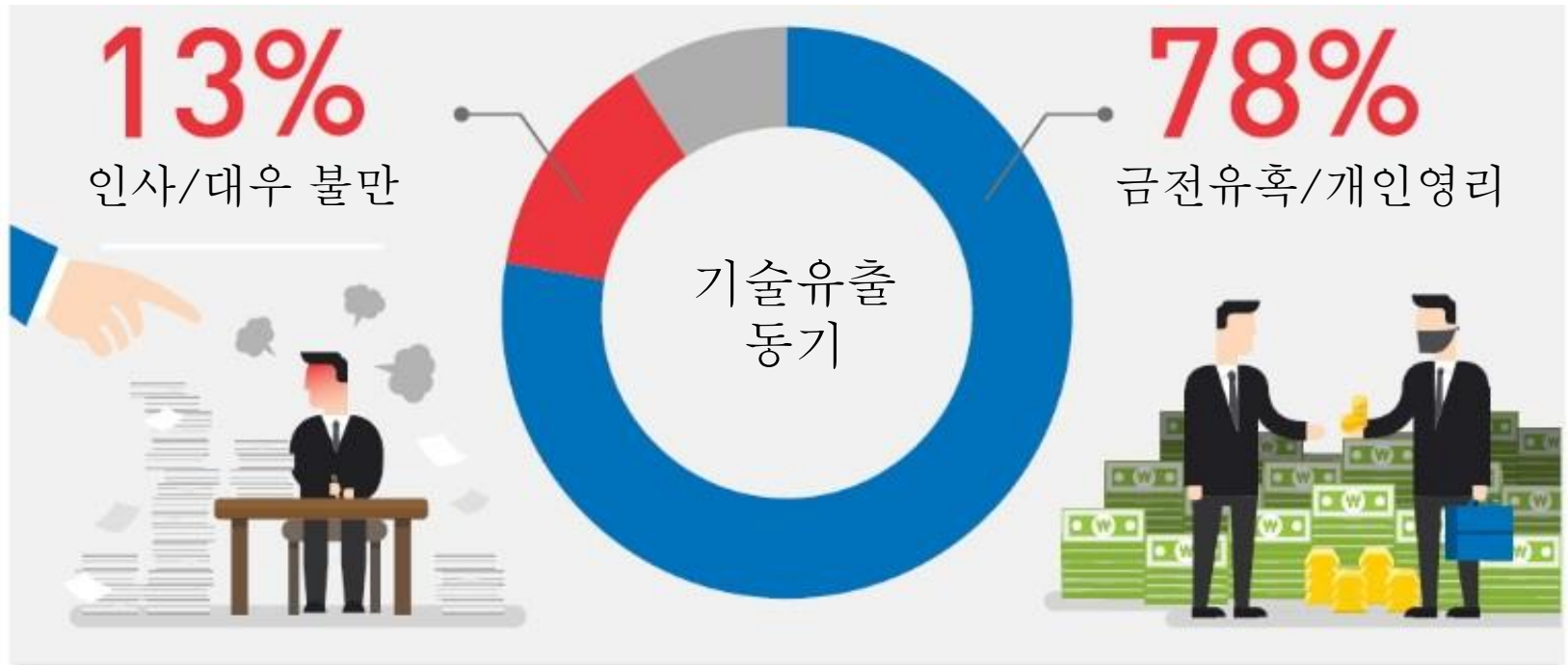
(2010년~2014년/최근5년)



2014년 기술유출 통계

(자료: 산업기밀보호센터)

기술유출의 동기



산업스파이 수법
첨단화/지능화/고도화

2014년 기술유출 통계

(자료: 산업기밀보호센터)

산업스파이 사건의 징후

- ✓ 타회사에서 유사제품 생산
- ✓ 가격 인하 요구 또는 거래선 교체
- ✓ 제품 A/S 이유 등 소스코드 요구
- ✓ 생산제품 주문량 또는 매출액 갑자기 감소
- ✓ 공동연구, 합작투자 등 의향서만 체결 후 본 계약 미루기

자 료

특허청 위탁사업
영업비밀 유출 대응 메뉴얼
(한국)

일본무역진흥기구
2015년3월

영업비밀관리지침

2003년1월30일
(전부개정:2015년1월28일)

경제산업성

목 차

- ◆ I. 한국의 최근 영업비밀 침해 사례.....●
- ◆ 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 ◆ I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실태.....●
- ◆ IV. 영업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I. 한국의 최근 영업비밀 침해 사례

- ◆ I. 한국의 최근 영업비밀 침해 사례
- ◆ 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 ◆ I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실태
- ◆ IV. 영업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I. 한국의 최근 영업비밀 침해 사례



영업비밀침해 제소
2012년 도쿄 지방법원

posco

사건의 배경



2007년 방향성 전자강판에 관한 POSCO의 영업비밀을 중국 경쟁사에 넘긴 혐의로 POSCO의 전직연구원 2명을 대구 지방법원에 기소함.



2008년 1심 판결문과 2010년 2심 판결문에서 “...POSCO가...제조기술을 개발할 당시 신일본제철의 퇴역 기술자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들로부터 **신일본제철의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점...”과 같이 판시함으로써, POSCO가 신일본제철에서 해당 기술에 관한 기초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남.

I. 한국의 최근 영업비밀 침해 사례



新日鐵住金

영업비밀침해 제소

2012년 도쿄 지방법원

posco

본 사건으로부터 떠오른 산업스파이의 3가지 수법

수법1
자료의 반출

수법2
중핵기술자의 농락

수법3
은폐 공작

즉시 최신 생산설비를 설립 중핵기술자를 교묘하게 훔친 정보를 “사용하지 하여 일본기업을 잡으려는 의도 스카웃하여, 협력자로 삼기 않는” 것처럼 하기 위해 더미에서, 타겟은 **일본기업의** 때문에, **중전의 영업비밀 관리** 특허를 출원하는 등, **발각된 최첨단 제조설비의 설비자료, 시책으로는 막을 수 없다.** 경우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

조업자료 자체.

* 実原 幾雄, 2014. 11. 27., “당사에 관한 영업비밀도용소송의 개요와 교훈, 영업비밀보호법제에 관하여”

I. 한국의 최근 영업비밀 침해 사례



영업비밀침해 제소

2014년 도쿄 지방법원



사건의 개요

- 도시바의 플래시메모리 기술이 SK하이닉스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도시바의 퇴직자 S씨(도시바의 제휴업체인 '샌디스크'사에서 근무했음)가 일본 경찰에 체포됨(2014년 3월).
- S씨는 도시바에 재직중이던 2008년, 도시바의 플래시 메모리의 개발 거점인 요카이치공장(미에현)四日市工場(三重県)에서, 메모리의 대용량화에 필요한 최신의 연구 정보를 기록매체에 복사하여, 전직처인 SK 하이닉스에 제공한 혐의를 받음.
- 2015년 3월 판결(도쿄 지방법원): “우리나라(일본) 중요산업의 정보가 유출돼 사회에 끼친 충격이 크다...(연구자료의 유출은) **극히 악질적인 영업비밀의 정보 개시다...**”라고 하며 S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엔의 판결을 선고함.

I. 한국의 최근 영업비밀 침해 사례

부정경쟁방지법(일본) 개정법률안의 개요*: 2015년 3월 13일 공포

A. 抑止力の向上

(1) 法定刑の引上げ等

抑止力向上のため、**罰金刑を引き上げる**。(現行:個人1千万円以下、法人3億円以下)また、**犯罪収益を没収**できることとする。

【第21条第1項、第3項、第10項】

(2) 非親告罪化

営業秘密侵害罪を**非親告罪**とする(公訴提起にあたって被害者からの告訴が不要となる)。

【新第21条第5項】

(3) 立証負担の軽減

立証が困難である「加害者(被告)の企業情報の不正使用」について、**一定の要件の下、被害者の立証負担を軽減**する。(被告が当該情報の不使用を立証)

【新第5条の2】

(4) 企業情報使用物品の譲渡・輸出入等行為

企業情報を侵害して生産された物品を譲渡・輸出入等する行為を、損害賠償や差止請求の対象とするとともに、**刑事罰の対象とする**。

【民事:新第2条第1項第10号】

【刑事:新第21条第1項第9号】

B. 処罰範囲の整備

(1) 企業情報窃取等の未遂行為

「サイバー攻撃」などによる企業情報窃取や転売等の**未遂行為**を刑事罰の対象とする。

【新第21条第4項】

(2) 転々流通した企業情報の転得者

転々流通する企業情報について、**不正に取得されたことを知って取得した者**による使用、転売等を刑事罰の対象とする。(現行:実行行為者からの直接の取得者のみ)

【新第21条第1項第8号】

(3) クラウドなど海外保管情報の窃取

日本企業が国内で管理し、海外で保管する情報の「**取得・領得**」行為も刑事罰の対象とする。(例:海外サーバーからの情報窃取など)

【新第21条第6項】

<最近の営業秘密漏えい事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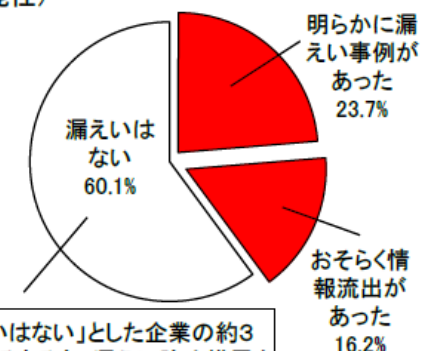
➢新日鐵の高機能鋼板の技術情報がポスコ(韓)に漏えい(2012提訴)

➢東芝のフラッシュメモリの技術情報がSKハイニックス(韓)に漏えい(2014提訴)

➢ベネッセの顧客情報がSE・名簿事業者等に漏えい(2014)

情報の漏洩の実態

少なくとも約4割の大企業(全企業で約14%)で情報漏えいの疑い(これも氷山の一角に過ぎない可能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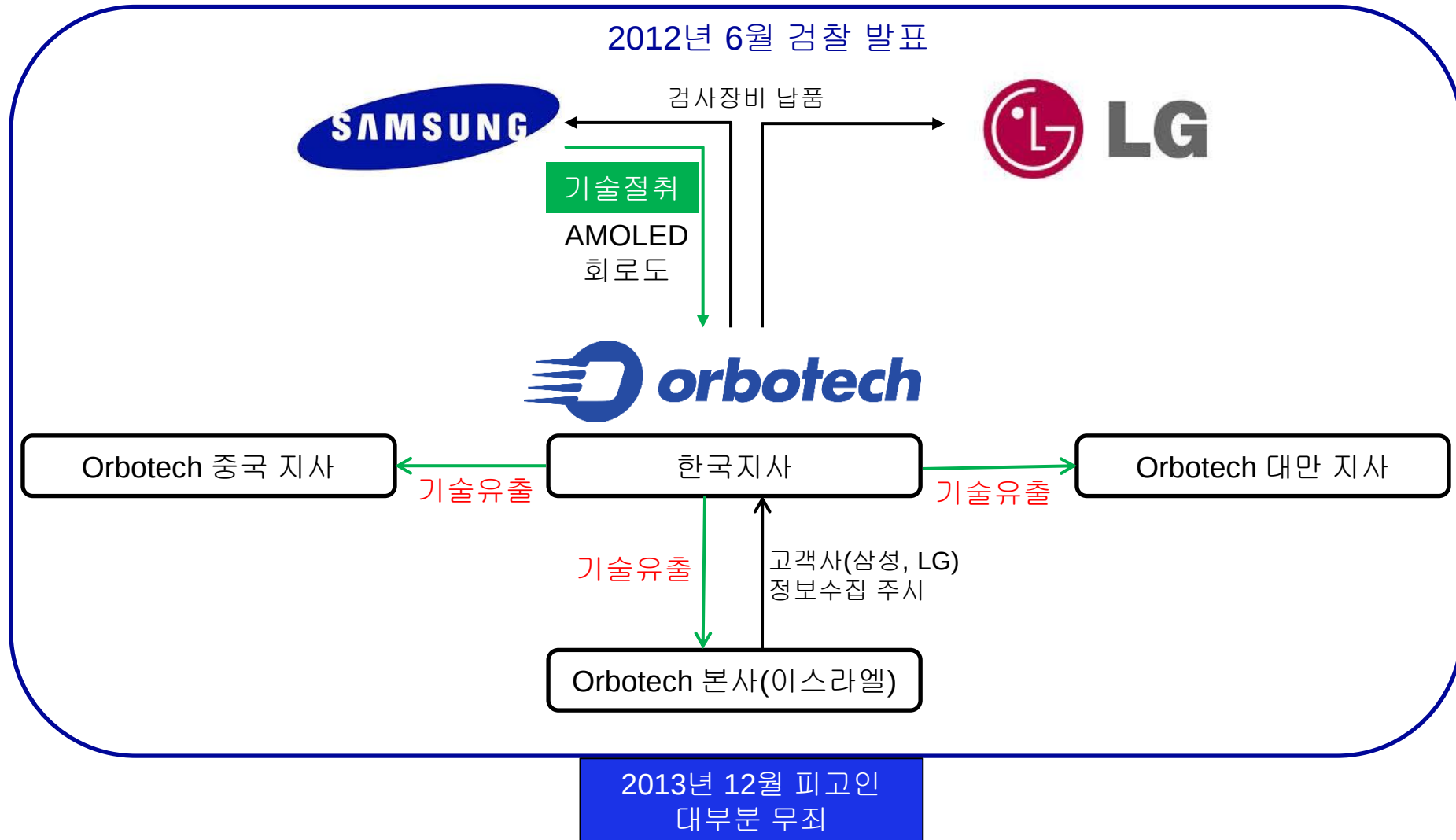


※「漏えいはない」とした企業の約3割は、そもそも、漏えい防止措置を何ら取っていないと回答

(出典) 経済産業省『平成24年度 人材を通じた技術流出に關する調査研究』アンケート調査(回答約3000社)

* <http://www.meti.go.jp/press/2014/03/20150313002/20150313002-3.pdf>

I. 한국의 최근 영업비밀 침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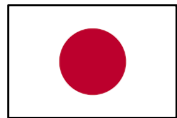


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 ◆ I. 한국의 최근 영업비밀침해 사례.....●
- ◆ 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 ◆ I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실태.....●
- ◆ IV. 영업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1. 영업비밀 요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6항

이 법률에서 ‘영업비밀’이란,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의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공언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요건] 비밀관리성, 유용성, 비공지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영업비밀보호법’)」 제2조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요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유지성

* 개정 전의 ‘상당한 노력’ 보다 완화된 표현임.

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정보가 들어있는 컴퓨터의 **ID** 및 비밀번호를 여러 직원이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ID**와 암호를 스티커에 써 붙였고, 퇴직자가 나와도 **ID**와 암호가 변경되지 않은 사안에서 **ID**와 비밀번호의 취지가 유명무실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한, 또한 비밀관리성을 인정하는데 방해되지 않는다고 하여 **비밀관리성을 긍정** (오사카 지판 평성20년 6월 12일 평성18년(와)5172 호).

암호가 변경된 적이 없었고, **PC**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가격목록을 인쇄한 것에 ‘기밀’ 등의 인쇄를 하는 결정은 없었던 사안에서, 가격목록에 기계제조업자로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이 분명한 매입 원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참작하여, 가격목록의 외부로의 게시나 반출이 허용되고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비밀관리성을 긍정** (나고야 지판 평성20년 3월 13일 평성 17년(와)384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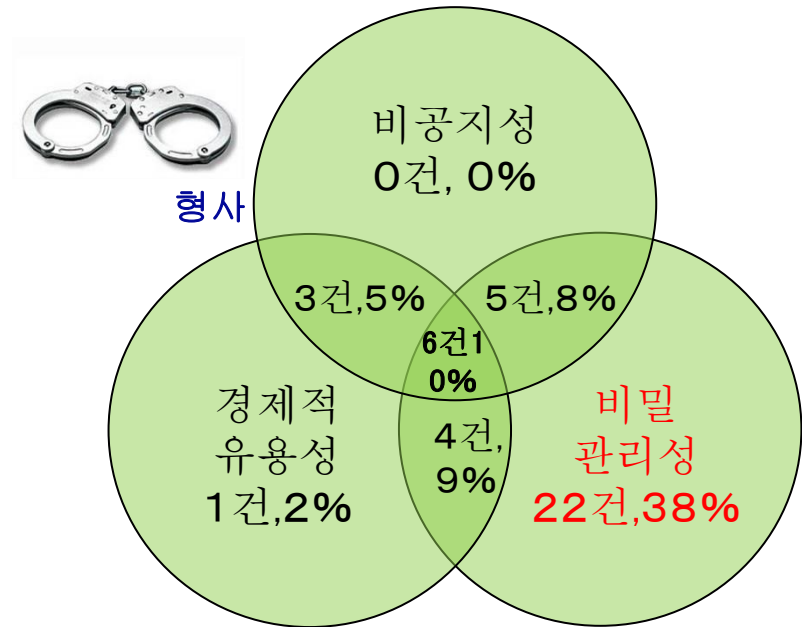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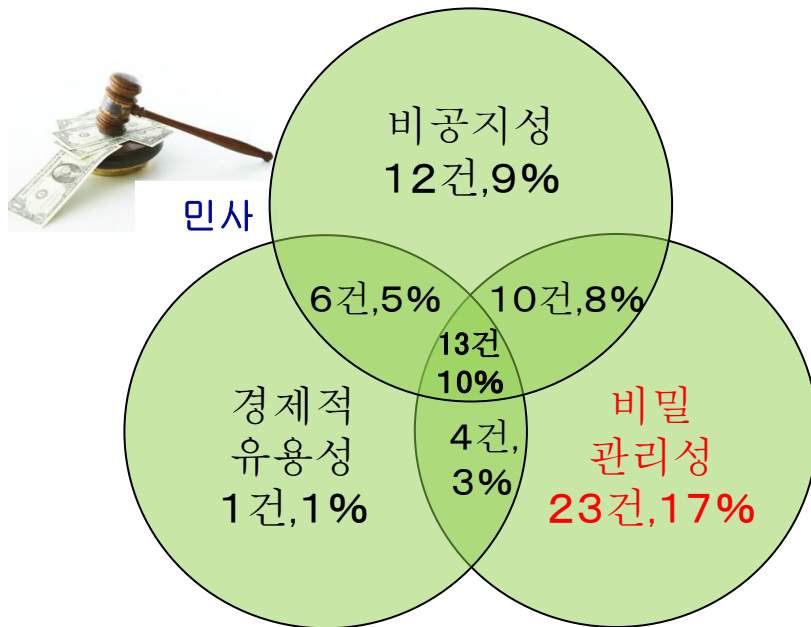


프로그램 소스코드와 같은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관리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직원들에게 각자 그 접근 권한에 따라 고유의 식별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접근 및 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접근이나 복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로그기록을 남겨 누가 언제 접근해서 어떤 작업을 하였는지를 사후에라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안관리 전담 직원을 두어 그 담당자의 사전 허락에 의한 접근만 허용하는 등의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2006고단4808).

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1. 영업비밀 요건 - 판례에서의 적용

❖ 영업비밀 보호요건의 부족을 이유로 **기각(무죄)**된 유형 분류



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1. 영업비밀 요건 (1) 비공지성

- ❖ 정의 :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 ❖ 어떤 아이디어가 국내에서 사용된 바는 없다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 또는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다면, 그 아이디어는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지만, 외국기술을 수입·개량하여 비밀로 관리해오고 있었다면, 그 기술은 영업비밀에 속한다.
- ❖ 절대적인 비밀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또는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밀로서 유지되고 있으면 충분.**

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1. 영업비밀 요건 (2) 경제적 유용성

- ❖ “독립된 경제적 가치” :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
- ❖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독립된 경제적 가치 인정.
- ❖ 유출될 경우 적어도 경쟁사가 동종 품목을 개발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시간을 단축하는 등에 기여할 만한 정보도 포함.

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1. 영업비밀 요건 (3) 비밀유지성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 유지’의 예시: 대법원 2008도3435 판결

- ❖ 보관책임자 지정
- ❖ 보안장치
- ❖ 보안관리규정
- ❖ 업무파일에 관하여 중요도에 따라 분류
- ❖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
- ❖ 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복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
- ❖ 방화벽 설치
- ❖ 개개인의 컴퓨터에서 내부 네트워크망을 통한 접근 가능 여부 등

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1. 영업비밀 요건 (3) 비밀유지성

-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지 아니하면서 일반적인 **회사기밀 유지각서**를 제출받은 것만으로는 **비밀관리성 인정할 수 없다**
 - 컴퓨터에 비밀번호 설정 없다.
 - 별도의 잠금장치 없다(누구든지 컴퓨터 자료 열람, 복사 가능).
 - 정기적으로 백업한 **CD**를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

- ❖ 보안관리를 하여 왔지만 당해 자료가 비밀로 분류 또는 표시되지 않았고 대외비로 관리하였다는 주장하면서도 **어떻게 분류 및 관리 하였는지 입증 못한 사안**에서 비밀관리성 부인(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12** 판결)

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2. 영업비밀 침해의 유형(영업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 6가지

❖ 부정취득행위(2조3호가목)



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2. 영업비밀 침해의 유형(영업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 6가지

❖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악의 취득 행위(2조3호나목)



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2. 영업비밀 침해의 유형(영업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 6가지

❖ 사후적 관여 행위(2조3호다목)



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2. 영업비밀 침해의 유형(영업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 6가지

❖ 부정공개행위(2조3호라목)



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2. 영업비밀 침해의 유형(영업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 6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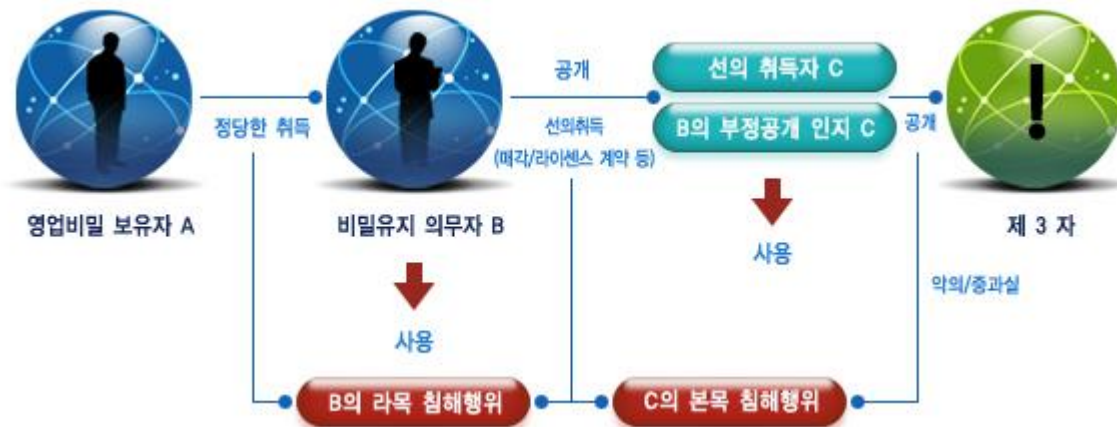
❖ 부정공개행위자로부터의 악위 취득 행위(2조3호마목)



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2. 영업비밀 침해의 유형(영업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 6가지

❖ 부정공개행위에 관한 사후적 관여 행위(2조3호바목)



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3.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구제*

예방조치

증거자료 확보	✓ 퇴사자 참여 프로젝트의 서류, 서약서 관리/점검 ✓ 영업비밀 관리대장 기록 ✓ ID의 이용현황 보존 ✓ 시건장치나 출입통제시스템에 카드키 시스템 도입
원본증명제도	✓ 영업비밀의 원본 여부 및 존재시점 증명
전직금지약정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가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영업비밀보호법상의 금지 청구권의 내용으로서, 경업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한국대법원 판결)

분쟁발생



* “영업비밀 침해 시 분쟁해결 절차”, 영업비밀보호센터

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3.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구제

민사소송



가처분절차	✓ 잠정적인 침해금지 명령
민사적청구권	✓ 금지 및 예방청구권 ✓ 폐기/제거 등 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손해액의 추정 등) ✓ 신용회복청구권
재판상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	✓ 문서제출명령: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손해액 산정시 필요한 자료 제출 ✓ 비밀유지명령: 소송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영업비밀 사용 금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영업비밀 공개 금지
민사소송절차	✓ 보통절차: 판결절차, 강제집행절차 ✓ 특별절차: 제소 전 화해절차 ✓ 부수절차: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증거보전절차, 집행문 부여절차, 가압류절차, 가처분절차

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3.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구제

형사소송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대응	✓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 공소사실의 특징: 영업비밀 침해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
일반 형법에 의한 대응	✓ 업무상 배임죄: 비밀유지의무자가 배임행위를 저지른 경우 ✓ 업무방해죄: 업무를 방해한 경우 ✓ 절도죄: 영업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저장매체 등을 절취한 경우 ✓ 재물손괴죄: 장부 은닉, 저장매체 손상, 잠금장치 훼손 등 ✓ 비밀침해죄: 영업비밀 기재 문서에 비밀장치 등을 한 경우
형사소송절차	✓ 공소 제기 전 절차: 수사절차, 공소절차 ✓ 공소 제기 후 절차: 판결절차, 형집행절차

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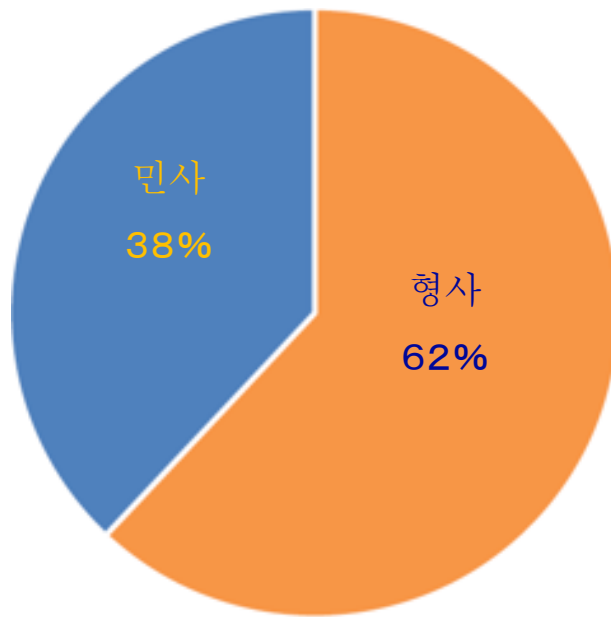
4.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타 제도의 운영현황

- (1) 기술자료 임치 제도
- (2)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 (3)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5) 상법
- (6) 지식재산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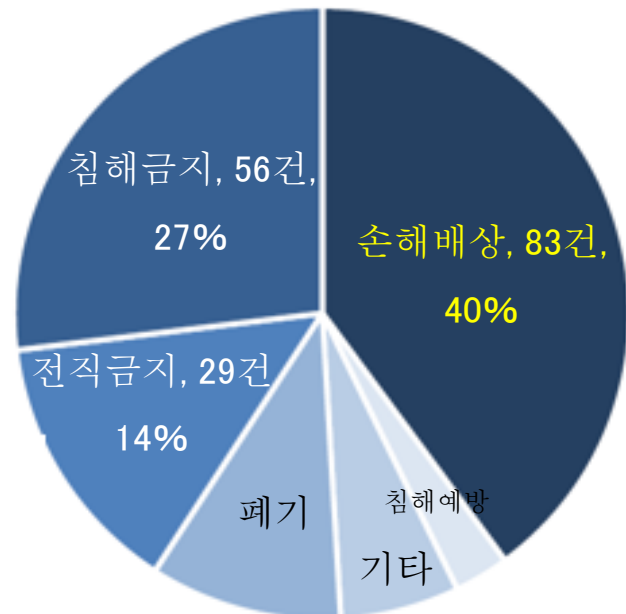
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5.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판례의 분석(2005~2010년)

[사건의 유형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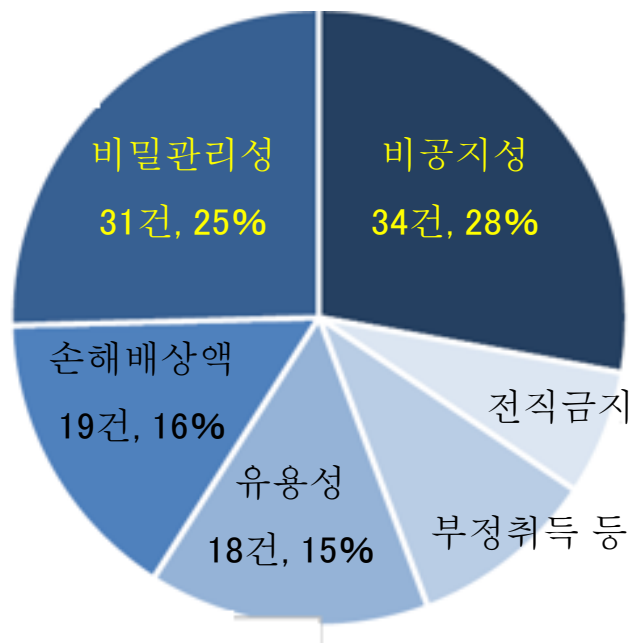
[청구취지별 분류(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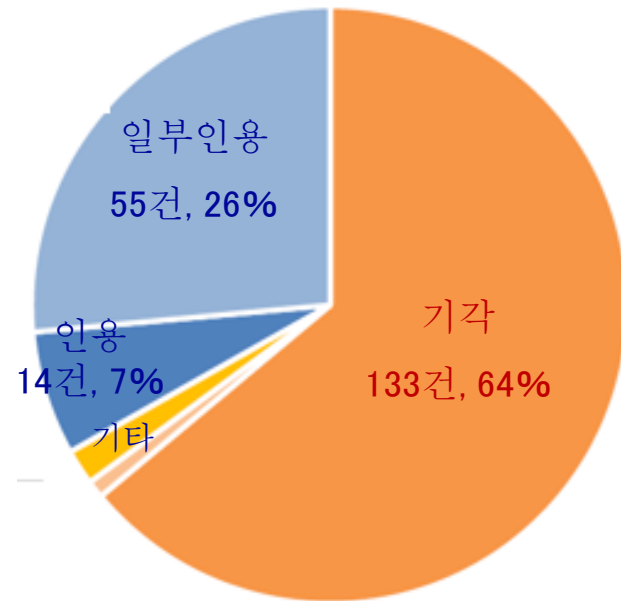
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5.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판례의 분석(2005~2010년)

[주요 쟁점별 분류(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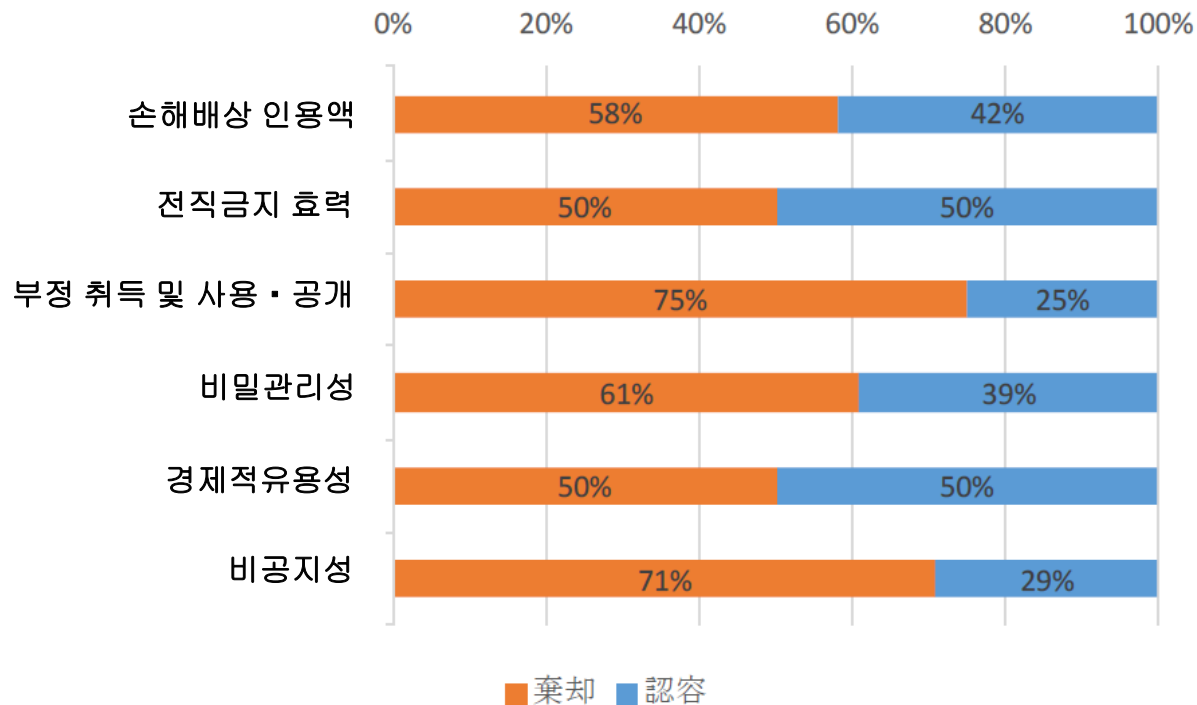
[결과별 분류(민사사건)]



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5.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판례의 분석(2005~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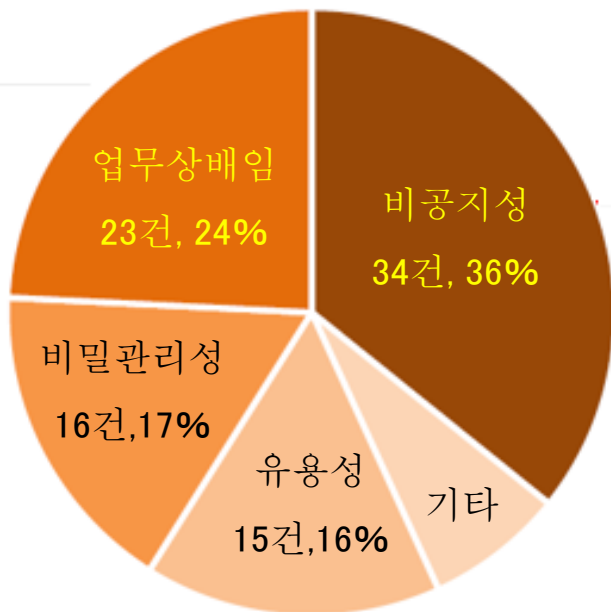
[주요 쟁점별 인용율/기각율(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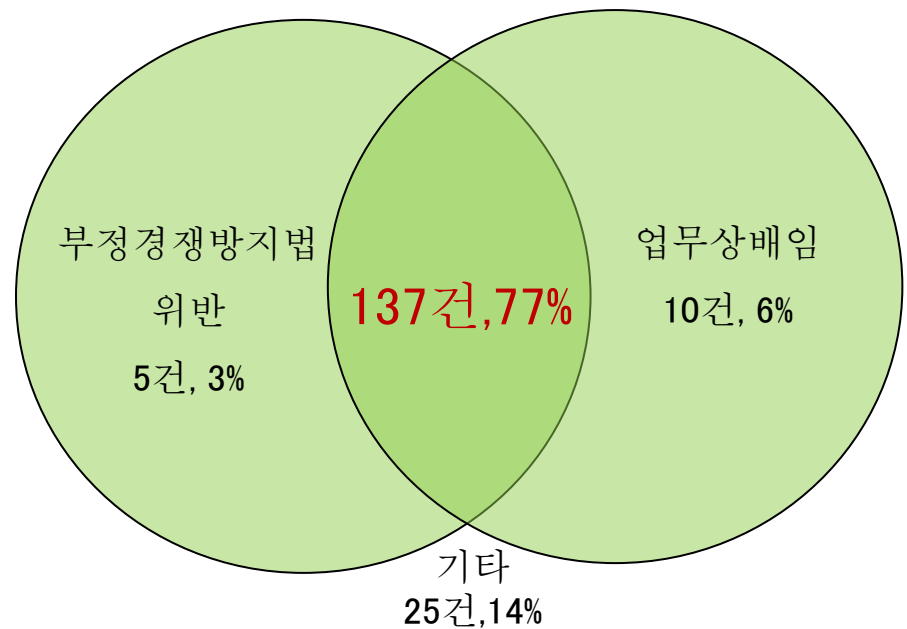
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판례의 분석(2005~2010년)

[유형별 주요 쟁점(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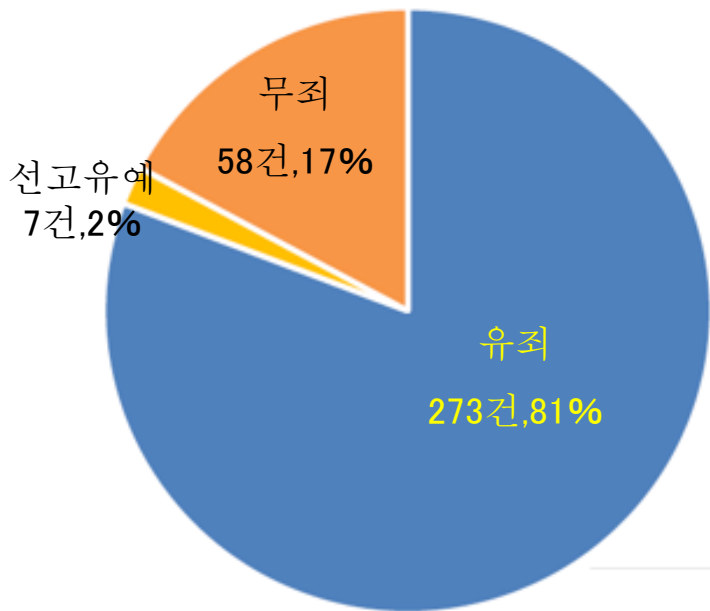
[형법과의 동시적용 인용율(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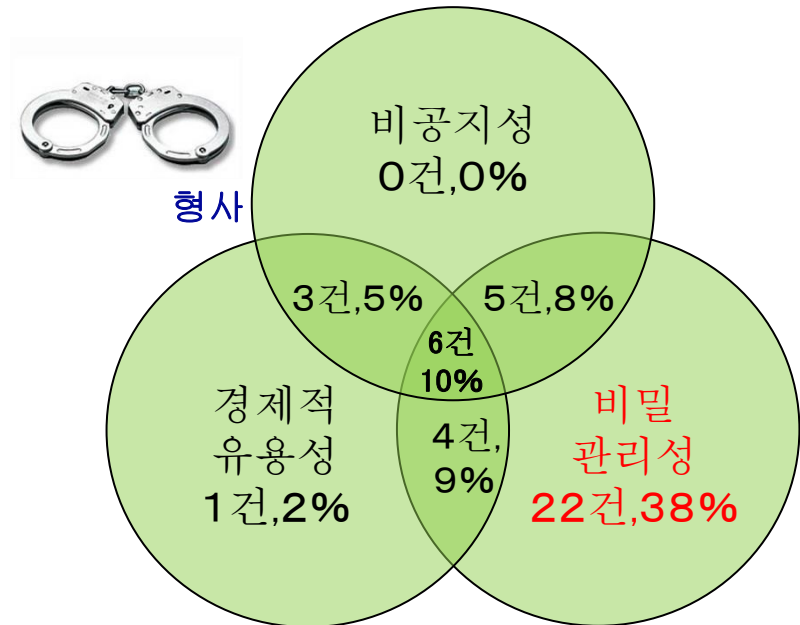
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판례의 분석(2005~2010년)

[형사사건의 결과]



[무죄사유별 분류(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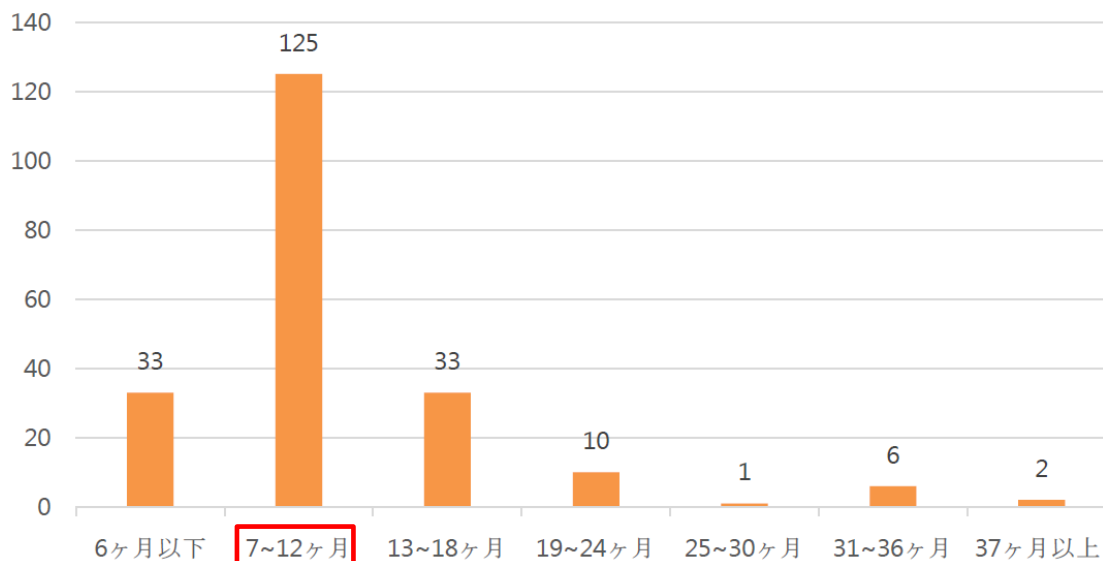
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판례의 분석(2005~2010년)

[유/무죄 분류(형사)](2007~2010년)

計	有罪			無罪
	小計: 92 (100%)	自由刑: 78 (84.8%)	罰金刑: 14 (15.2%)	
116 (100%)	92 (79.3%)			24 (20.7%)

[양형(징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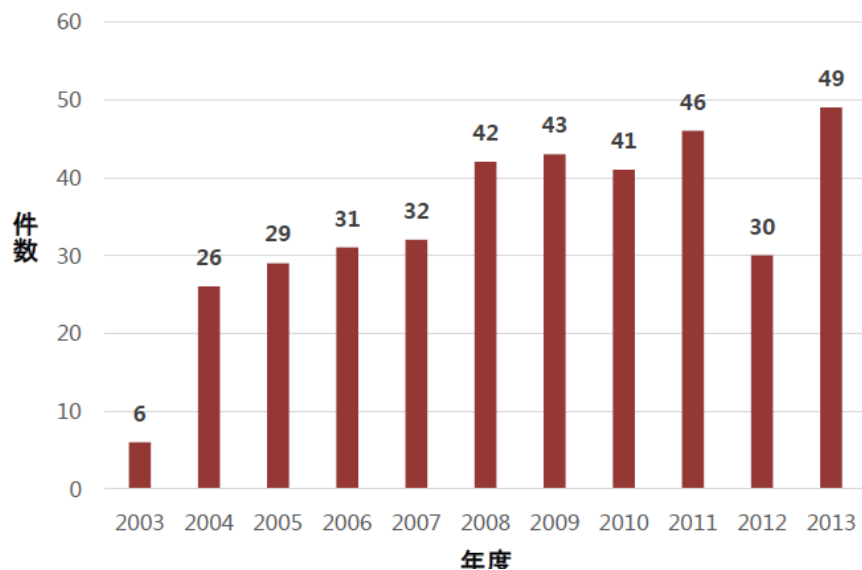


I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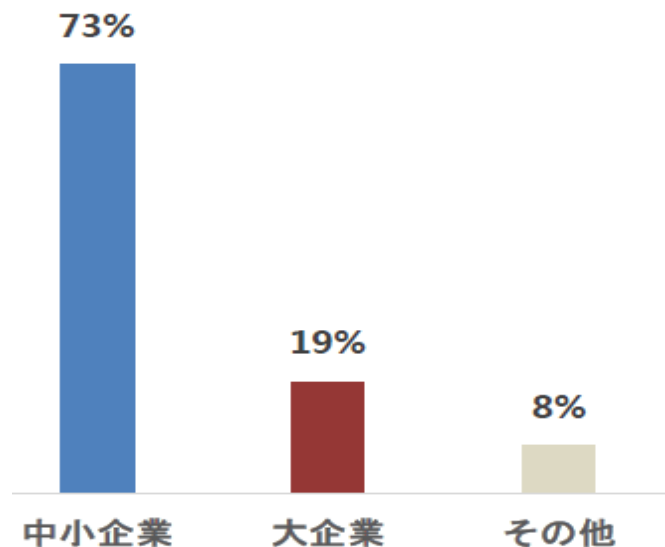
- I. 한국의 최근 영업비밀침해 사례
- 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 I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실태**
- IV. 영업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I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실태

연도별 산업기술의 유출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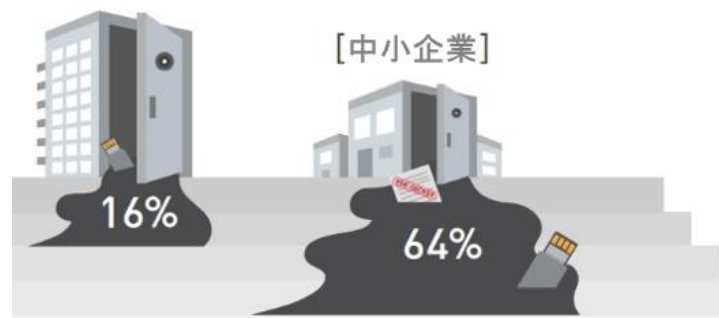


기업의 규모별 산업기술의 유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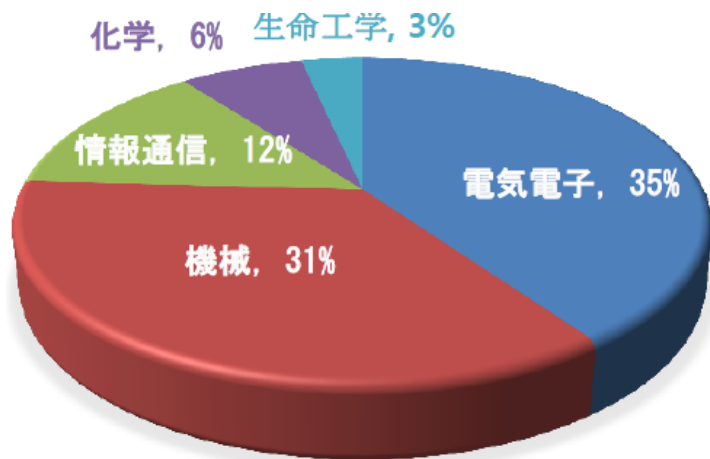
[大企業]

(2010년~2014년/最近5년)



I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실태

기술분야별 기술유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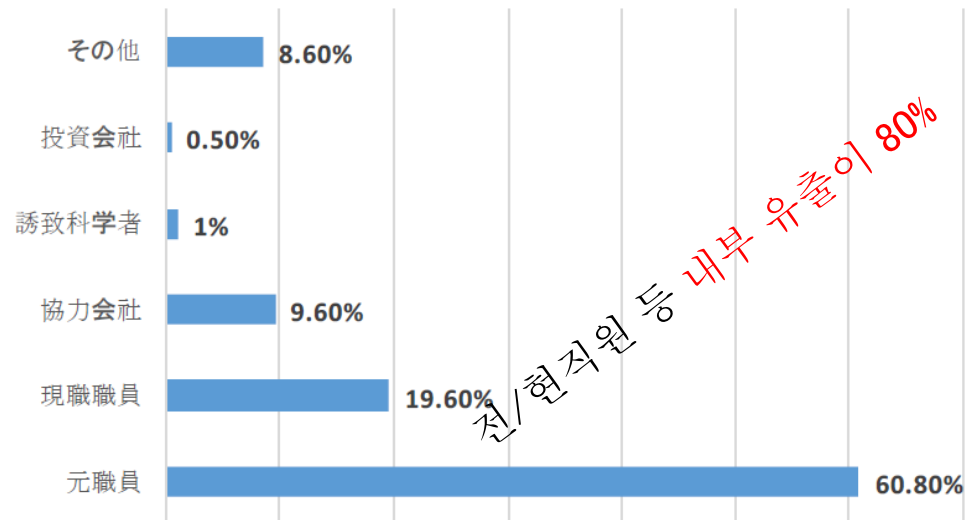
産業スパイ標的技術

大企業のIT分野技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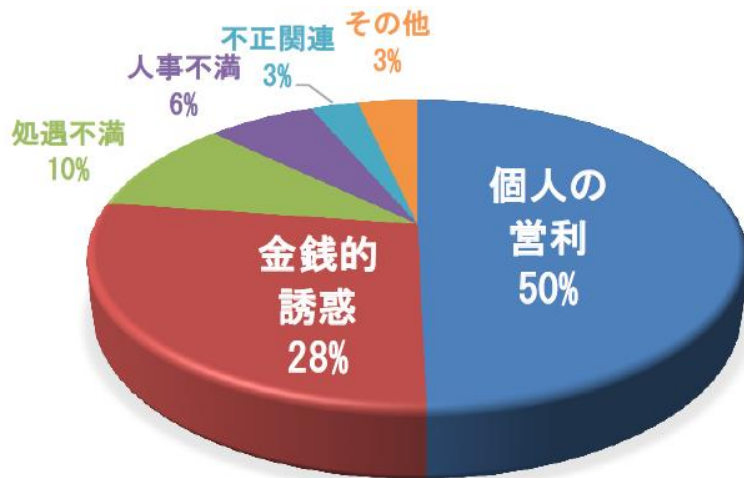
中小企業の精密機械
分野技術へ移動

유출의 주체별 기술유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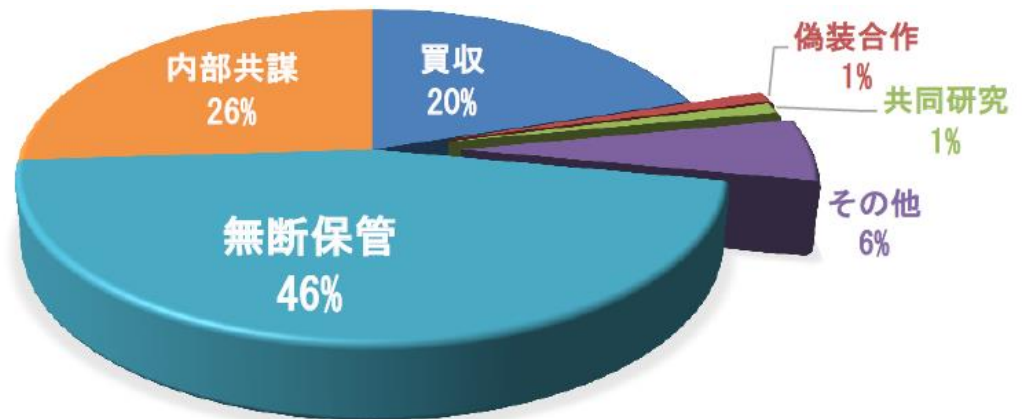


I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실태

유출의 동기별 기술유출 현황



유출의 유형별 기술유출 현황



I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실태

유출경로별 기술유출 현황

구분	비율
CD, USB 등 외장 메모리	22.8%
서류나 도면 등의 복사 및 절취	20.3%
도급 등 타사와의 거래	12.2%
E-mail, 인터넷 등 네트워크	7.3%
시찰 및 견학	4.9%
합작 사업, 공동연구	4.1%
관계자 매수	4.1%
인력 스카우트	0.8%
컴퓨터 해킹	0.8%
기타	12.2%
무응답	10.5%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침해유형별 통계

침해행위유형		민사사건	형사사건	총합
(가)목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6	18	24
(나)목	부정 취득된 영업비밀을 악의·중과실로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2	7	9
(다)목	부정취득행위에 관한 사후적 관여행위	2	4	6
(라)목	영업비밀을 부정·공개·사용하는 행위	61	167	228
(마)목	부정 공개된 영업비밀의 악의·중과실로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1	2	3
(바)목	부정 공개된 행위에 관한 사후 악의 행위	0	1	1

I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실태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별 사례

A. 부정취득행위

- 롯데 계열사, ATM 핵심 프로그램 부정취득 적발 사례
- 경쟁업체 직원 매수 회원정보 등 빼돌린 상조업체 직원 적발 사례
- 경쟁사로 이직해 영업비밀을 빼돌린 30대 적발 사례

B. 부정취득행위 및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 옛 직장 메일서버 침입, 영업기밀 빼낸 전직 직원 적발 사례
- 에어텔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전직 직원 적발 사례
- 반도체 제조기술 빼돌린 연구원 적발 사례

C. 부정공개행위

- 삼성 아몰레드 기술 유출 적발 사례
- 이직하면서 회사 정보 빼낸 LG전자 전 부장 적발 사례
- 중소기업 신기술을 미국으로 유출하려던 기술닥터 적발 사례
- 연봉 때문에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빼돌린 30대 적발 사례
- 근무업체 영업정보 빼내 창업한 20대 적발 사례

I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실태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별 사례

C. 부정공개행위

- 접착제 핵심기술 빼낸 연구원 적발 사례
- 러닝머신 생산기술 유출한 기술유출사범 적발 사례
- 국내 공병검사장비 핵심기술 일본기업에 빼돌린 일당 적발 사례
- 투자 미끼로 200억대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일당 적발 사례

D. 부정공개행위 및 부정공개행위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 수백억대 핵심기술 중국에 유출 일당 적발 사례
- 생산설비 모방 △△사 간부 적발 사례
- 차세대 소화기 기술을 유출한 전직원 적발 사례

IV. 영업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 ◆ I. 한국의 최근 영업비밀침해 사례
- ◆ 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 ◆ III.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실태
- ◆ IV. 영업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IV. 영업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업의 대응 *자료: 경제산업성 “모노즈쿠리 백서(2010)”

단위: %

구분	기술유출 대책	국내 거점	해외 거점
기본전략	✓ 유지해야 할 비밀내용의 파악/설정	19.5	12.4
	✓ 영업비밀관리방침의 제정	16.0	8.2
대외적인 대응	✓ 거래처와의 비밀유지계약	37.2	22.2
	✓ 지식재산권의 취득	36.6	19
	✓ 노하우/기술의 유보	8.2	5.2
사내의 대응	✓ 지식재산전문 담당자/부문의 설치	12.6	3.8
	✓ 데이터 등의 암호화/접근 제한	16.0	9.1
	✓ 데이터 등의 반출 제한/기록	23.6	13.9
	✓ 현직 종업원과의 비밀유지계약	26.8	13.6
	✓ 종업원의 퇴직시의 비밀유지계약	21.1	9.8
	✓ 전직금지기간의 설정	9.5	4.3
	✓ 사내에서의 교육 활동	20.4	4.8
	✓ 기타	12.2	18.4

IV. 영업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업의 대응 *자료: 경제산업성 “모노즈쿠리 백서(2011)”

국제화와 기술유출 방지 대책-블랙박스화 방법	비율
✓ 현지 종업원에 대한 정보 접근 제한	38.5
✓ 핵심부품/재료 등의 정보를 영업비밀로서 관리	37.2
✓ 노하우를 차단한 설비는 일본에서 수출	35.9
✓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구역을 설정	20.5
✓ 특허화하지 않고, 노하우로서 보호	19.2
✓ 도면의 분할 등으로 다수의 생산거점/협력회사에 분할 발주	6.4
✓ 기간부품을 반도체칩화 등 노하우/코어기술을 차단	3.8
✓ 모방이 어렵도록 형상/메커니즘의 설계변경	3.8
✓ 기타	5.1

IV. 영업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목 차

1. 영업비밀의 보호조치

- 1) 영업비밀의 범위 설정 및 분류체계의 구축
- 2) 제도적 규제
- 3) 인적관리/물적관리
- 4) 한국특허정보원이 제공하는 영업비밀표준관리 시스템/관리실태 진단 시스템 및 교육 서비스

2. 영업비밀유출 발생 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

- 1)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
- 2) 기술자료임치제도(Technology Escrow)

3. 기업간 거래시의 영업비밀 유출 실태 및 사전 방지책

4.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 실태 및 사전 방지책

IV. 영업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1. 영업비밀보호 조치 1) 영업비밀의 범위 설정 및 분류 체계의 구축

원고는 문서를 자료, 문서, 도면, 사진으로 구분하여 대외비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영업자료에 관하여는 **어떻게 분류 및 관리하였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안**에서 비밀관리성을 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 41286 판결)

❖ 영업비밀의 범위 설정 시의 고려사항

- 자사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연구 개발한 기술 또는 가공한 정보
- 타사와 대비하여 기술적 또는 경영적인 비교 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또는 가공된 정보
- 기술적으로 또는 경영 전력상 타사로 유출시에 현저한 손해가 예상되는 정보

❖ 판례가 인정한 영업비밀의 예시

- 일종의 **실패한 실험 데이터**로서 회로 설계도면에 담긴 온도보상 회로도
- 선박용 엔진 부품의 **단가 리스트**
-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강사비 단가, 전체 자금의 현황, **고객 리스트**

IV. 영업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1. 영업비밀의 보호 조치 1) 영업비밀의 범위 설정 및 분류 체계의 구축

❖ 영업비밀 지정 기준의 예시

등급분류 (금액)		비밀여부 (등급)	분류기준
유출시 피해 정도	109	I	-유출시 회사의 존망이 우려되는 정보 -새로운 경쟁자를 발생시키는 정보 -회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매출을 발생시키는 핵심정보
	876	II	-유출시 매출 및 고객과의 관계, 기술개발 지연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정보 *영업부(예시: 고객비밀정보, 컨설팅 산출물 등) *솔루션 사업부(예시: 고객비밀 정보, 프로젝트 산출물) *연구소(예시: 개발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개발설계서) *경영기획팀(예시: 회사경영정보, 회사정보, 인사정보)
	54	III	-일시적으로 회사업무 추진에 장애를 주거나 경쟁자에게 유리한 정보 -회사 임직원에게만 한정적으로 공개되는 정보
	321	일반문서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특별한 비용이나 노력이 투입되지 않는 정보 -유출 시 손실 비용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한 정보 -공지되어 널리 알려져 비밀이 아닌 것 -간행물 등 매체에 실린 정보, 판매 제품을 분해하여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정보

영업비밀의 미분류 등을 이유로
영업비밀성이 부정된 사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광통신 수동소자인 스플리터와 AWG 관련 전자 파일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에서, 업무 파일에 관하여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았고, 연구원 뿐만 아니라 다른 생산직 사원들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파일 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복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이유로 비밀 유지성이 부정된 바 있다.

IV. 영업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1. 영업비밀의 보호 조치 2) 제도적 규제: 비밀유지의무/경업금지의 약정

❖ 종업원의 영업비밀유지의무(고용기간중/퇴직 후)

영업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써 유지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의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 특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도 포함한다.**

종업원의 퇴직 후, 비밀유지의무가 문제된 사례

- ① 영업비밀이 유형물에 고정되지 않은 경우
- ② 종업원의 직무발명의 경우
- ③ 종업원이 가진 일반지식인 경우: 당해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원고(통상, 영업비밀 보유자)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 경업금지의 약정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인정 요건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노동자의 퇴직 전의 지위, ③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 ④ **노동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⑤ 노동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⑥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IV. 영업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1. 영업비밀의 보호 조치 2) 제도적 규제: 비밀유지의무/경업금지의 약정



❖ 경업금지의 약정

판단기준

영업 비밀 보유자가 그 영업 비밀을 독자개발 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기간, 영업비밀, 해당 기술 정보 분야의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속도와 새로운 제품의 수명주기, 영업비밀 침해자의 인적, 물적 시설, 특허권의 존속 기간 등 기타 지적재산권 의 존속기간 등

경업금지기간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침해금지기간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과 인적 신뢰 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범위로 제한될 것이며, 영업비밀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얻은 **유리한 출발 (head start) 내지 시간 절약**이라는 우월적 위치를 상쇄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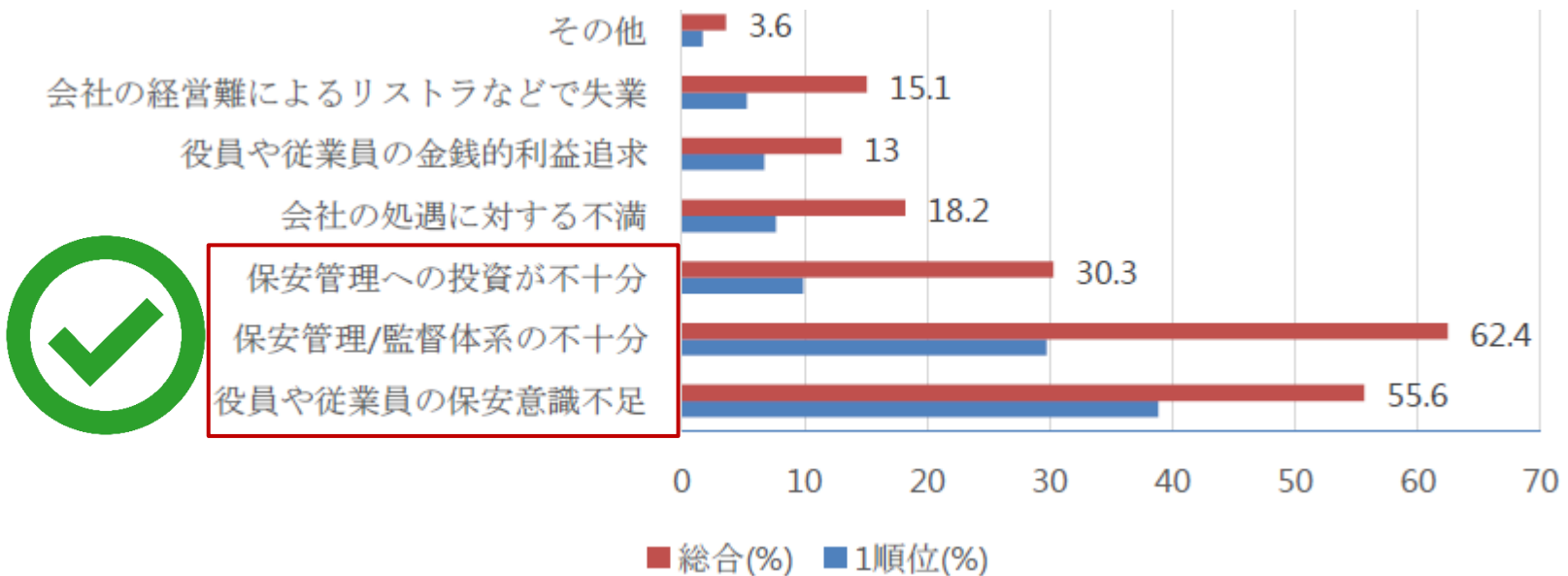
경업금지기간의 계산점

퇴직시

IV. 영업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1. 영업비밀의 보호 조치 3) 인적관리/물적관리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고의 발생 이유



IV. 영업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1. 영업비밀의 보호 조치 3) 인적관리/물적관리

재직중인 종업원에 대한 관리사항

구분	주요 내용
직원통제방법	-비밀 취급자에 대한 비밀유지 약정서 징구 -비밀 취급 이력서 작성 -영업비밀 보안 교육의 주기적 실시 -영업비밀 취급 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와 네트워크 접근 제한 조치 -인사 이력 및 취급 업무와 정보를 관리 보관
보상제도	-직무발명제도의 적극적 활용 -비밀 취급자에 대한 특별 수단 지급

외부자의 관리

- ① 상대의 영업비밀 시스템 확인
- ② 중요정보 제공 회피
- ③ 제공할 영업비밀의 특정
- ④ 기술자료요구서의 작성
- ⑤ 기술자료임치제도의 활용

퇴직자에 대한 조치 사항

구분	주요내용
퇴직자에 대한 통제근거확보	퇴직 자가 재직 시 작성한 비밀유지 약정서, 경업금지약정서의 보관 퇴직 후, 재취업 시에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에 대한 교육 실시
동종업체 창업, 경쟁업체 취업 시 경고조치 침해금지가처분 등의 조치	입증이 용이하도록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우편으로 경고 조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또는 전직금지 가처분 등을 법원에 청구
퇴직자에 대한 혜택제공	퇴직 자에 대한 재취업 알선 임원 급 퇴직자에 대해, 비상임 고문 직 등을 제안

물적관리

- ① 통제구역의 설정
- ② 컴퓨터 관리
- ③ 서류 등 기록매체의 관리
- ④ 통신보안
- ⑤ 비밀관리의 이력을 보관

IV. 영업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1. 영업비밀의 보호 조치 4) 한국특허정보원이 제공하는 영업비밀표준 관리 시스템

❖ 서비스의 개요



❖ 서비스 이용 전에 필요한 구축 사항

- 영업비밀 관리조직 및 총괄 관리자 지정
- 영업비밀 관리규정 및 지침의 제정
- 회사 내 부서별 주요 보유 정보의 파악
- 영업비밀로 표시·보관할 정보 분류
- 영업비밀 관리 및 시스템 활용 교육일정 수립
- 물리적 관리(통제구역 설정 등) 적용
- 기술적 관리(시스템 보안 등) 적용

IV. 영업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1. 영업비밀의 보호 조치 4) 한국특허정보원이 제공하는 영업비밀표준 관리 시스템

❖ 서비스의 구성

구분		주요내용
기본옵션		영업비밀 표준관리 시스템
		원본증명 PKI 모듈
		시스템 설치 및 사용자 교육
		영업비밀 보호 관련 콘텐츠 제공
추가옵션	A	보안관리 솔루션(DRM/DLP)
	B	운영서버 및 DB 관리툴

❖ 서비스의 장점/활용 방안

- 영업비밀의 보호 및 관리 비용의 삭감, 영업비밀의 보호 및 관리 인프라의 강화
- 표준화된 관리 체계의 구현, 영업비밀 관리의 효율화 및 관리 프로세스의 간소화
- 원본증명서비스와의 연계, 각종 보안 솔루션과 연계 가능
- 비밀관리성의 입증
- 비공지성의 입증
- 이용자의 인식 개선
- 관리실태 진단 및 교육 서비스

IV. 영업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2. 영업비밀 유출 발생 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

❖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



✓ 원본 증명 서비스의 기능 및 활용 방법

- 2013년 개정법: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에 관한 다수의 규정이 신설되었음.
- 원본 증명서의 등록시점과 기재 내용에 추정력을 인정. 2015년 7월 29일 시행(법9조의2③)

✓ 일본기업이 원본 증명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의 유의점

- 공인인증서의 등록이 필수→국내에 현지법인이 없어, 서비스의 활용이 원칙 불가능
- 한국 내의 법무법인이나 특허법인의 명의로 원본증명 서비스를 신청
- 당해 법무법인이나 특허법인과 별도의 계약이 필요

IV. 영업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2. 영업비밀 유출 발생 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

❖ 기술자료 임치 제도(Technology Escrow)

기술임치제도(Technology Escrow)란, 시스템의 유지보수, 기술탈취방지, 담보, 기술이전 등의 목적으로 임치인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도면 등 영업활동에 유효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신뢰성이 있는 제3의 기관(수치인)과 임치계약을 합의한 후에 보관하고, 계약상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임치물을 특정 상대방에게 교부해 주는 제도이다.

✓ 기술자료 임치 제도의 기능 및 활용 방법

- 기술자료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 기술탈취의 방지
- 지식재산권 보호 및 비용 삭감,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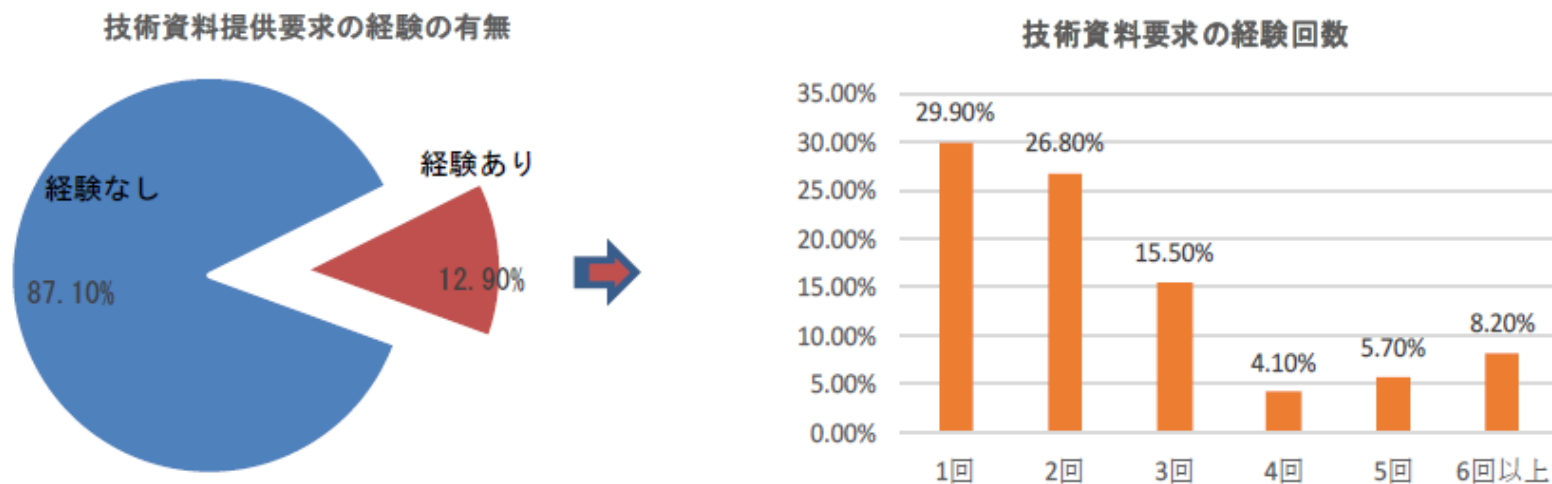
✓ 일본기업이 기술자료 임치 제도를 이용할 경우의 유의점

- 수탁기업은, 한국법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규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위탁기업과 임치기업에 관해서는, 법률에 제한이 없다.

IV. 영업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3. 기업 간 거래시의 영업비밀 유출 실태 및 사전 방지책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거래시의 영업비밀 유출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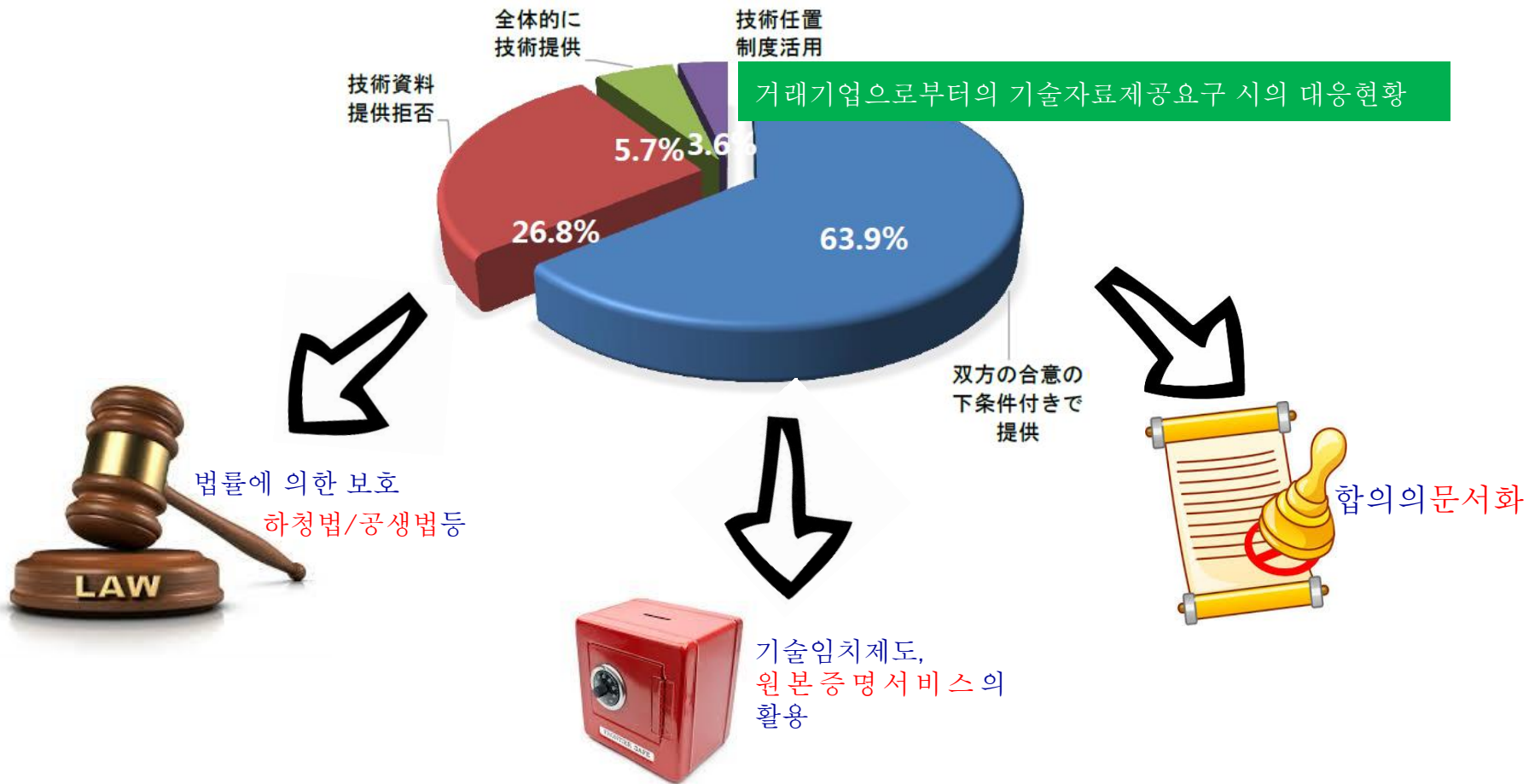


❖ 전형적인 패턴

- 하도급 거래 관계를 이용하여 확보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계열사로 무단 유출**
- 협력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여 **하도급 대금 인하에 이용**
- 중소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과정에서** 기술을 탈취한 후 독자적으로 제품 개발

IV. 영업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3. 기업 간 거래시의 영업비밀 유출 실태 및 사전 방지책



IV. 영업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3. 기업 간 거래시의 영업비밀 유출 실태 및 사전 방지책

❖ 2011. 7. 6 제정, 기술자료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정당한 이유가 **없**는 기술자료제공 요구의 예시

<예시 1> 원 사업자가 하도급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유지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제안서 등의 기술 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예시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재료, 가격, 납품단가 구성 내역 원가등이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예시 3>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예시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 사업자들과 재계약시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하는 경우

IV. 영업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3. 기업 간 거래시의 영업비밀 유출 실태 및 사전 방지책

❖ 2011. 7. 6 제정, 기술자료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기술자료제공 요구의 예시

<예시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후 그 약정에 따라 기술자료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예시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의한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 3>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제공기로 한 기왕이 기술자료 내역 및 성과배분조건 등이 포함된 공동기술개발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예시 4> 원사업자가 공동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 출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IV. 영업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3. 기업 간 거래시의 영업비밀 유출 실태 및 사전 방지책

❖ 2011. 7. 6 제정, 기술자료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기술자료제공 요구의 예시

<예시 5> 납품 제품의 하자발생 원인 규명, 불량 예방 등 공동의 품질관리를 위해 비밀유지의무등을 규정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예시 6> 공동기술 개발 참여 여부, 신제품 또는 신기술 적용 여부, 거래 개시 여부등을 결정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 능력의 평가 또는 부품 승인 등에 필요하여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한 서면을 작성한 후 기술자료 제공을 욕하는 경우

<예시 7> 수의 계약 시 또는 공급 업자를 대상으로 지명입찰을 통한 위탁계약시 아직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주문품의 기준가격을 마련하기 위해 개략적인 원가 내역이 포함된 견적서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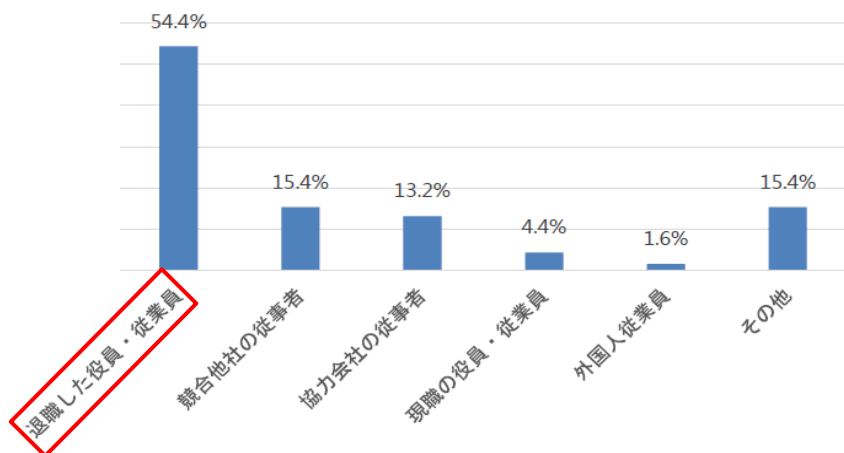
<예시 8>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 인상 요청을 받은 후 인상폭 결정을 위해 해당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예시 9> 수급 사업자의 요청으로 원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기술을 전수·지도하거나, 수급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동 전수·지도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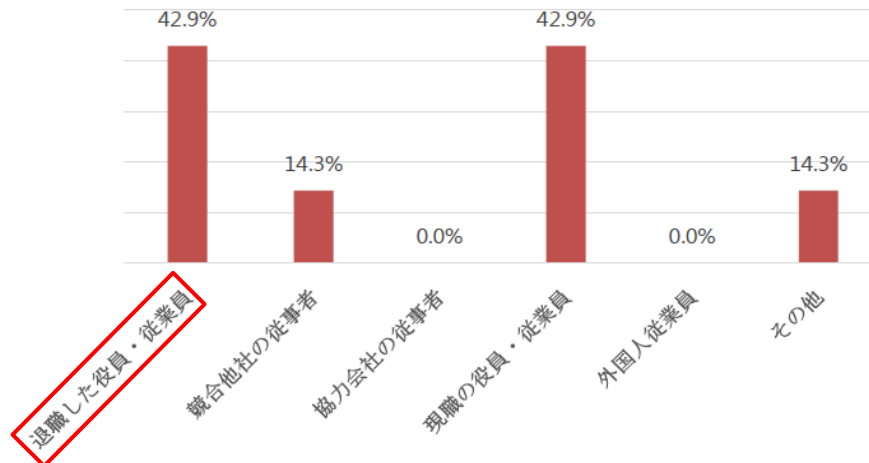
IV. 영업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4.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 실태 및 사전 방지책

❖ 중소기업에서의 기술정보 유출의 관계자



❖ 대기업에서의 기술정보 유출의 관계자



❖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의 사전 방지책

- ✓ 영업비밀의 사용 및 공개를 금지하는 침해금지가처분
- ✓ 전직금지청구

국내 기업·일본 은퇴기술 지원 사업
(단위=건)



2014. 12. 31.
매일경제

IV. 영업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정리(1)

❖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의 문제점

- ✓ 기소된 형사사건의 유죄율(80% 정도)이 일반 형사사건의 유죄율(99%)보다 낮다.
 - 영업비밀 사건의 경우 실무 수사진들의 기술적 배경 지식이 중요한데, 최근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에 반해 수사 역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 범행으로 얻는 이득과 경제적 파장에 비해 형사 처벌의 수위가 매우 낮음(징역형 중 집행 유예비율이 매우 높고, 벌금도 낮음).
- ✓ 증거 개시제도(Discovery)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 사실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고, 침해액에 대한 입증도 용이하지 않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 그에 따른 대책

- ✓ 최대한 침해 예방에 주력한다. 침해 발생시 영업비밀 전문가(변호사 등)와 반드시 상담한다.
- ✓ 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영업비밀에 대한 추정력 부여→입증 용이)
- ✓ 영업비밀 취급 시 취급자 및 일시 등의 정보를 문서화 하여 보관한다.
- ✓ 형사 고소를 제기하여 공권력에 의한 증거 수집을 고려한다(충분한 증거의 확보).
- ✓ 가처분 신청을 적극 활용한다(침해 확대의 방지).

IV. 영업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정리(2) 한국의 법원에서 확인하는 요소-비밀관리성에 관하여

확인사항	Check
✓ 회사 내의 정보 중, 영업비밀정보가 분류되어 있는가?	
✓ 영업비밀정보에 비밀표시는 되어 있는가?	
✓ 영업비밀정보에 대해 등급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가?	
✓ 보안규정과 보안책임자를 두고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가?	
✓ 외부에 공개하는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가?	
✓ 개인 컴퓨터 및 서버 시스템에 대해 영업비밀보호 준수 규정이 적용되는가?	
✓ 거래업체 등 외부업체와의 접촉 시 보안 관리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가?	
✓ 영업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 USB, 휴대폰, 노트북 등에 대한 통제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입사자(신입/경력직)에 대한 영업비밀 부정유입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퇴사자에 대한 영업비밀 유출방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감사합니다!!!

www.hanyanglaw.com

